

의안번호	2213400
의 퇴 인	안도결의원
회 답 일	2025.10.30.
추 계 번호	25G54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벤처투자 과세특례의 세액공제율 상향, 피투자기업 설립 이후
기간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
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 추계)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시장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 과세 특례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,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4,829억원 등 2027~2029년 3년간 총 1조 5,459억원(연평균 5,153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업력요건 완화 (안 제13조)	-122	-122	-122	-366	-122
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인상, 적용기한 연장 및 업력요건 완화 (안 제13조의2)	-2,680	-2,992	-3,340	-9,012	-3,004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(안 제16조)	-2,027	-2,027	-2,027	-6,081	-2,027
계	-4,829	-5,141	-5,489	-15,459	-5,15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13조 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및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 ○ 피투자기업의 설립 이후 기간요건 완화 - (업력) 7년 이내 → 10년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안 제13조의2 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- (공제율) 5% → 10% (수도권 외 15%)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 ○ 피출자기업의 설립 이후 기간요건 완화 - (업력) 7년 이내 → 10년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안 제16조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,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등 - 현행 소득공제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투자방식</th><th>출자·투자금액</th><th>공제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1호·제2호·제5호 (간접투자)</td><td>전체</td><td>10%</td></tr> <tr> <td rowspan="3">제3호·제4호·제6호 (직접투자)</td><td>3천만원 이하</td><td>100%</td></tr> <tr> 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70%</td>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</td><td>30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*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% * 적용기한: 2025.12.31. - 개정안 소득공제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투자방식</th><th>출자·투자금액</th><th>공제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제1호·제2호·제5호 (간접투자)</td><td>2억원 이하</td><td>15%</td></tr> <tr> <td>2억원 초과</td><td>10%</td></tr> <tr> <td rowspan="3">제3호·제4호·제6호 (직접투자)</td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100%</td></tr> <tr> <td>1억원 이하</td><td>70%</td></tr> <tr> <td>1억원 초과</td><td>30%</td></tr> </tbody> </table> * 공제한도: 제1호·제2호·제5호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%와 5천만원 중 작은 금액, 제3호·제4호·제6호는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% * 적용기한: 2028.12.31.	투자방식	출자·투자금액	공제율	제1호·제2호·제5호 (간접투자)	전체	10%	제3호·제4호·제6호 (직접투자)	3천만원 이하	100%	5천만원 이하	70%	5천만원 초과	30%	투자방식	출자·투자금액	공제율	제1호·제2호·제5호 (간접투자)	2억원 이하	15%	2억원 초과	10%	제3호·제4호·제6호 (직접투자)	5천만원 이하	100%	1억원 이하	70%	1억원 초과	30%
투자방식	출자·투자금액	공제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호·제2호·제5호 (간접투자)	전체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호·제4호·제6호 (직접투자)	3천만원 이하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이하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초과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투자방식	출자·투자금액	공제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호·제2호·제5호 (간접투자)	2억원 이하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3호·제4호·제6호 (직접투자)	5천만원 이하	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억원 이하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억원 초과	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 (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)	○	
2	안 제13조의2 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3	안 제16조제1항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	추계 (적용기한 연장)
4	안 제16조제1항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X	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 (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)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 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의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(안 제13조)
 - 향후 내국법인의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동 세액공제의 최근 5년간 공제실적은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 -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의 완화(7년 이내→10년 이내)로 인한 세액공제액은 [표 2]의 업력별 벤처기업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
-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 인상,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의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(안 제13조의2)
 - 향후 내국법인의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18~2024년 벤처캐피털 신규투자액 연평균 증가율(11.6%)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
 - 내국법인의 직접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,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 간접투자 증가와 유사한 추이로 내국법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한다고 가정
 -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의 완화(7년 이내→10년 이내)와 공제율 인상에 따른 공제실적의 증가는 [표 2]의 업력 및 지역별 기업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증가한다고 가정
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투자 방식 및 투자 금액(현행 제16조제1항제1호~제6호)¹⁾에 따라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의 경우, 세수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없어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만 추계
 -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(징수기준)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비용추계 곤란,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2027~2029년 동안 발생
 - 투자유형·투자금액별 공제율 조정 등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 신고자료별로 투자유형별 출자·투자금액의 구성비 자료 등이 필요하지만, 관련 자료가 미비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²⁾

1) 현행 제1호·제2호·제5호의 소득공제율: 10%

- 제1호: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
- 제2호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
- 제5호: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

현행 제3호·제4호·제6호의 소득공제율: 출자·투자금액별로 30~100%

- 제3호: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
- 제4호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
- 제6호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

2)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각각 1.6만명, 2.3만명이며, 소득공제 규모는 각각 3,800억원, 4,753억원 규모임. 근로소득세의 경우 투자유형별·납입금액 규모별 납입금액에 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지만, 근로소득세보다 공제규모가 더 큰 종합소득세의 경우 관련자료가 미비하여 세수효과 추계 곤란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및
피투자기업의 설립 이후 기간요건 완화(안 제13조)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

○ 다음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벤처투자회사 등*이 해당 출자로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

※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: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

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-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- 벤처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기금운용법인 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- 벤처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- 벤처투자회사,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집합투자업자 등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
개정안은 동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3년 연장하고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을 완화하므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- 설립 이후 기간요건: (현행) 7년 이내 → (개정안) 10년 이내

□ (감면실적)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의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동 제도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는 2020년 24억원에서 2023년 20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,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
 -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, 자산시장 호황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등이 주식 및 출자지분 매도를 통해 투자이익을 실현하여 비과세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4]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추이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기간 평균 (‘20~’24)
비과세	24	41	120	205	65	91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방법

□ (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)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수효과는 동 제도에 따른 비과세의 최근 5년(2020~2024년) 기간 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향후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세수 감소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비과세 규모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□ (업력요건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)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의 완화(7년 이내→10년 이내)로 인한 세액공제액은 [표 2]의 업력별 벤처기업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5] 적용기한 연장과 업력요건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세수 감소효과	122	122	122
(기한연장) 대상기업: 업력 < 7년	91	91	91
(요건완화) 대상기업: 7년 ≤ 업력 < 10년	31	31	31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을 완화(7년 이내 → 10년 이내)함에 따라, 법인세는 2027년 122억 원, 2029년 122억 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366억원(연평균 122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피투자기업의 설립 이후 기간요건 완화 (안 제13조)	-122	-122	-122	-366	-122

나.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3조의2)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
 - 공제대상자: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, 기금운용법인 등 내국법인
 - 출자(투자) 대상
 - ①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 - ②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
 - 공제세액: (현행)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%
→ (개정안) 10% (수도권 외 15%)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 - 설립 이후 기간요건: (현행) 7년 이내 → (개정안) 10년 이내

- (감면실적)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법인세 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- 동 감면은 2018년부터 발생하였으며, 벤처투자 확대에 따라 감면실적은 장기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

[표 7] 벤처기업 등예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실적: 2018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감면실적	135	172	260	335	676	652	553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벤처기업 신규투자 현황)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기업 신규투자액은 3.4조원에서 2024년 6.6조원으로 증가
- 2018~2024년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의 기간 평균 증가율은 11.6%
 - 2021~2022년 신규투자액 급증은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

[표 8] 벤처기업캐피털 신규투자 현황: 2018~2024년
(단위: 개소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'18~'24 기간 증가율
투자받은 기업 수	1,399	1,608	2,130	2,438	2,474	2,281	2,494	10.1
투자액	34,249	42,777	43,045	76,802	67,640	53,977	66,315	11.6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(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)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8~2024년간 벤처기업 신규투자액 증가율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- 내국법인의 직접 투자액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, 2018~2024년간 벤처기업 신규투자액 연평균 증가율(11.6%)을 적용하여 추계기간(2027~2029년)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규모를 추계

-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~2029년에 발생

[표 9]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(적용기한 연장) 대상기업: 업력 < 7년	769	859	959

□ (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)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에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을 반영하여 추계

-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의 경우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면, 수도권외의 경우(5% → 10%)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와 동일한 수준의 세수효과가 발생하고, 비수도권의 경우(5% → 15%) 두 배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

- (수도권)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

= 해당 수도권 벤처기업 비율×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분

- (비수도권)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

= 2×해당 비수도권 벤처기업 비율×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분

[표 10]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		2027	2028	2029
세수효과 추정치	적용기한 연장		769	859	959
	공제율 인상	수도권 (5%→10%)	531	593	662
		비수도권 (5%→15%)	476	531	593

□ (업력요건 완화에 따른 세수효과)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의 완화(7년 이내 → 10년 이내)는 설립 이후 7년 이내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에 [표 2]의 지역 및 업력별 벤처기업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11] 적용기한 연장, 공제율 인상 및 업력요건 완화 따른 세수효과: 2027~2029년
(단위: 억원)

구분			2027	2028	2029
세수효과 추정치	적용기한 연장		769	859	959
	공제율 인상	수도권 (5%→10%)	531	593	662
		비수도권 (5%→15%)	476	531	593
	업력요건 완화 (7년→10년)	수도권	419	468	522
		비수도권	484	540	603
	합계		2,680	2,992	3,340

(3) 추계결과

-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고, 피투자기업에 대한 설립 이후 기간요건을 완화하며,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2,680억원, 2029년 3,340억원 등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9,012억원(연평균 3,00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29년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계	연평균
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율 인상 및 적용 기한 연장(안 제13조의2)	-2,680	-2,992	-3,340	-9,012	-3,004

다.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6조)

(1) 감면 실적

- (감면실적) 2025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,027억원임

[표 13]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 추이

(단위: 억원, %)

	2020 (실적)	2021 (실적)	2022 (실적)	2023 (실적)	2024 (실적)	2025 (잠정)
조세지출액 (증가율)	891 (50.3)	1,075 (20.7)	1,785 (66.0)	1,905 (6.7)	1,861 (-2.3)	2,027 (8.9)

자료: 대한민국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 방법

- 향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,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므로, 일몰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액(2025년 전망치)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○ 2025년 전망치에 2025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(3) 추계 결과

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~2031년 동안 총 6,081억원(연평균 2,02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4]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연장(안 제16조)	-2,027	-2,027	-2,027	-6,081	-2,027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